# Ⅲ 장학금 지급요청 및 지급 승인

## 1. 지원 범위 및 기준

▸**(지출 명의) 학생 본인**의 **주거 관련 지출 비용**만 지원 (단,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)
▸**(산정 기간) 지출일**이 **속한 월 기준 산정** (지출 원인 발생 월(예: n월분 월세)과 무관)
▸**(기간 예외) 아래에 해당**하는 경우, **사전·사후 지출**의 **해당월분(지출원인월) 인정**
- **(사전 지출)** 임차보증금, 임차료 선급금*, 관리비 선급금*
  * 선급금: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
  (단, 방학 기간 기숙사비를 학기 중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분도 선급금 인정 가능)
- **(사후 지출)**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(월세), 관리비 등의 지연 이체*
  * 지연 이체: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(익월) 이체된 경우

▸**(인정 지역) 대학 소재지**를 **기준**으로 **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(동일 광역교통권·인접 시·동일 군)**의 **주거지**에서 **발생한 지출**만 **인정**
  * 단,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(현장실습 등)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·군지역으로 인접 시 또는 동일 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(단, 해당 학기 전부 온라인 수강하는 경우에는, 거주 지역에 대한 대학의 예외 인정 처리 불가)

□ **임차비용**: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

○ **(임차료)** 당월 지출액 (※ 청구 대상 월과 무관하게 지출일이 속한 월의 비용만 인정)
  * 주택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  * 단, 기숙사 등 선납하는 경우 '임차료 선급금'으로 입력 시, 과거 지출분 인정

○ **(임차보증금)** 보증금의 4%를 월 환산하여 당월분 (보증금×0.04÷12)
  * (산정 예시) 보증금 1천만원인 경우, 1천만원×4%÷12개월=33,333원 인정

□ **이자비용:** 주거시설 임차·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(원금 제외)

○ **(주택 임차·저당 차입금** 또는 **월세 대출 이자상환액)** 당월 이자상환액
  ※ 단,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임차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중복지원 불가
  ※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로서 용도(전·월세 보증금, 주택자금, 월세 마련 대출 등), 원금 및 이자가 구분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, 사인 간 채무(용도 불문)는 인정 불가
  ※ **보증금**에 **본인부담금**, **대출금**이 섞여 있는 경우, **① 보증금 전액 입력(단, 보증금대출 이자비용 청구불가)** 또는 **② 보증금 본인부담금 입력 + 대출 이자비용 청구** 중 **택 1**

□ **수선유지비:**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

○ **(수선재료* 구입비)**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 구입 비용

* 벽지, 장판, 변기, 욕조, 전선, 수도관, 가스배관, 창문, 방충망, 방범창 등

○ **(설비·수리 서비스* 이용료)** 당월 설비·수리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

* 전기·가스·방수·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·에어컨 설치비 등(단, 제품 구입비 불가)

□ **수도광열비:** 상·하수도, 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·연료 비용

○ **(물 공급비용)** 상하수도, 공동수도, 급탕비*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

* 공동주택에서 온수 공급대가로 지불한 비용 (중앙 및 지역난방의 급탕비)

○ **(연료비)** 전기·도시가스·LPG·등유·연탄·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

□ **공동주택관리비:**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

* 단, 관리비를 선납하는 경우, '관리비 선급금'으로 입력 시 과거 지출분 인정

한국장학재단

# < 지출항목별 소명 서류 기준 >

| 구분 | | 소명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임차 비용 | 임차료 | · 임대차계약서 등 **임대차 관계 증빙서류**<br>-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(거주)확인서 등<br>· 계좌 입금내역 등 **임차료 지급 증빙서류**<br>- 계좌입금, 자동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| · 계약서 상 임차인은 본인 또는 부모에 한하여 인정<br>· 타인명의 계약 임차지에 공동거주하는 경우 증빙 필요(FAQ Ⅳ. Q.36 참조) |
| | 임차 보증금 | · 임대차계약서 등 **임대차 관계 증빙서류**<br>- 임대차(전대차)계약서, 입실(거주)확인서(기숙사 등) 등<br>· 계좌 입금내역 등 **임차보증금 지급 증빙서류**<br>- 계좌입금, 자동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| |
| 이자 비용 | 주택 임차 차입금 | · **원금과 이자의 내역이 구분되는 상환 증명서류**<br>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,<br>이자상환증명서, 이자납입증명서 등<br>※ 단, 월세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확인되어야 함 | ·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<br>· 차주(채무자)는 학생 본인에 한하여 인정 |
| | 주택 저당 차입금 | · **원금과 이자의 내역이 구분되는 상환 증명서류**<br>-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,<br>이자상환증명서, 이자납입증명서 등 | |
| 수선 유지비 | 수선 재료 구입비 | · **수선재료 구입이 확인되는 지출 증빙서류**<br>- (전자)세금계산서 (면세 물품은 '계산서')<br>-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<br>· **구입한 수선재료 물품 사진** | · 주거의 유지 및 수선에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인정<br>· 제품 구입비는 지원 불가<br>(에어컨 수리비O 에어컨 구입비X) |
| | 설비 수리 서비스 | · **설비·수리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는 지출 증빙서류**<br>- (전자)세금계산서 (면세 서비스는 '계산서')<br>-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<br>· **설비·수리 서비스 이용 사진** | |
| 수도 광열비 | 물 공급 | · **상하수도요금, 공동수도료, 물이용부담금 등 지출 서류**<br>- 요금납부내역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| · 수도, 전기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은 본인 명의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, 청구지 거주 확인을 위하여 학생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|
| | 연료비 | · **전기, 도시가스, LPG 등 연료비 지출 서류**<br>- (전기, 가스 등 공공요금) 납부내역서(영수증) 등<br>- (등유, 연탄 등 연료구입) (전자)세금계산서,<br>계산서(연탄 등 면세품),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전표 등 | |
| 공동주택 관리비 | | ·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 등 **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세대별 청구되어 지출한 증빙서류**<br>- 관리비 납부내역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| |

# 학생 지급요청서

## 지출범위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



- **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지원** (단,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)
- **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** (지출 원인 발생 월(예: n월분 월세)과 무관)
- **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**(동일 광역 교통권·인접 시·동일 군)**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**

○ **(임차비용)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**

- **임차료**: 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 등 임차료(월세 등) 비용
- **임차보증금**: 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
- **임차료 선급금**: 임대차기간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미리 지급

○ **(이자비용) 주거시설 임차·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**(원금 제외)

- **전월세보증금대출**: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
- **월세대출**: 월세대출 이자상환액
- **주택마련대출**: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

○ **(수선유지비)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**

- **수선재료 구입비**: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 구입 비용
- **설비·수리 서비스 이용료**: 당월 지출한 설비·수리 서비스 비용

○ **(수도광열비) 상·하수도, 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·연료 비용**

- **물 공급비용**: 상하수도, 공동수도,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
- **연료비**: 전기·도시가스·LPG·등유·연탄·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

○ **(공동주택관리비)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**

- **공동주택관리비**: 주택,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
- **관리비 선급금**: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동주택관리비를 미리 지급

# FAQ

## Question

**지급요청서 작성 시 지출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 하나요?**

## Answer

실제로 지출이 발생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월 지급요청서에 작성 하여야 합니다(**지출일 기준**).

예를 들어, 3월 분 관리비 청구 비용을 6월에 지출한 경우, 3월이 아닌 6월 지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소명하시면 됩니다.

다만, **임차보증금, 임차료선급금, 관리비선급금의** 경우 사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**과거일자로 지급요청서 작성** 가능합니다.

## Question

**지급요청서에서 기숙사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?**

## Answer

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해당 학기 비용을 일시금으로 선불 입금 하므로, 지급요청서 상 입력하실 때에는 대분류: **임차비용**, 상세 분류: **임차료 선급금**, 개월:**4(3 ~ 6월)**을 입력하시면 지출 금액이 1개월 분 자동 계산되어 입력 됩니다.
5, 6월 분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

* 실제 거주일수 상관없이 **1학기 분**이면 **4개월**로 계산합니다.

** 3월 20만원 정액지급은 **고려하지 않습니다.**

예) 1학기 기숙사비 60만원일 경우, 3월 20만원 정액지급,
4월 15만원, 5월 15만원, 6월 15만원 지급 (60만원/4 =15만원)

*** **의무 식비는 기숙사비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합니다.**